현안 21-07

SRI

이슈 & 포커스

2021. 12. 31.

수원시 주민자율분쟁조정 지원체계 구상

최 석 환*, 이 정 현**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csh@suwon.re.kr
**도시공간연구실 위촉연구원, checosa@suwon.re.kr

요약

- 주민자율분쟁조정은 법원의 타율적 분쟁해결이 아닌, 주민조정인의 조력을 받아 분쟁당사자가 상호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
-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이웃분쟁 뿐 아니라 가정 내 분쟁, 직장 내 분쟁, 학교 내 분쟁 등 다양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주민조정센터를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사회적 비용을 저감
- 국내에서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강동어울림,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등의 사례가 있으며, 국내외 사례를 통해 수원시 주민자율분쟁조정센터 설립을 위한 조직, 재정, 업무 등에 대해 검토하였음

정책제안

- 주민자치의 기본 관념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 스스로가 분쟁해결의 주체이자 객체로서 마을의 주요한 소통 및 의사결정 창구로서 건강한 시민의식을 배양하고 이웃공동체를 일궈가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의 역할은 프로그램과 예산, 공간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자문과 컨설팅을 조력할 전문가 풀을 제공해야 함
- 수원시의 경우 현재 갈등관리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정연구원 시민자치대학의 운영 프로그램과 수원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 등을 연계하여 주민자율분쟁조정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확대발전하는 것을 제안

KEYWORD : 주민분쟁, 주민자율분쟁조정 지원 체계, 마을 공동체 회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이슈 & 포커스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수원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원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Ⅰ. 주민자율분쟁조정의 의의와 효과

1 주민자율분쟁조정이란?

○ 주민자율분쟁조정이란 외국의 'Community Mediation'을 모티브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웃분쟁조정(서울YMCA, 2015), 주민자율조정(김지수 외, 2015), 공동체조정(홍수정, 2016), 마을분쟁해결(광주광역시)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

- 주민조정(Community Mediation)은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 간의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인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을 통하여 간편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박철규, 2016)으로서 이웃분쟁 뿐만 아니라 이혼, 가정폭력 같은 가정 내 분쟁,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사건 등도 포함되기도 함

※ 대체적 분쟁해결(ADR)에는 다양한 분쟁해결방식, 대표적으로 알선, 조정, 중재 등이 포함되지만 그 중심에는 조정(調停, Mediation)이 있음. 조정은 분쟁상황에서 분쟁당사자가 아닌 중립적 제3자가 분쟁당사자를 중개하고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소액청구에 적합하고, 금전청구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때도 유용함(김희경 외, 2018)

○ 주민자율분쟁조정은 ADR의 유형 중 하나인 '조정(調停, Mediation)'을 지역사회 내부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서, 이웃 간에 겪고 있는 갈등을 지역사회가 제3자의 관점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즉 지역사회 내부의 역량을 활용한 조정 유형(유병현, 2009)

- 자원봉사자인 주민들로 구성된 조정기구에서 동네의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장기화되어 복잡해지고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어 고통이 커지는 상황이 되기 전에,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하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조화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가꾸어 나가는 것을 말함(김희경 외, 2018)

2 주민자율분쟁조정의 의의와 효과

○ 주민자율분쟁조정은 법원의 타율적 분쟁해결이 아닌, 주민조정인의 조력을 받아 분쟁당사자가 상호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 법적 판단 결과가 명백한 분쟁 사건과 소송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을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의 형식으로 조기에 차단하여 무용한 소송절차의 남용을 막아 법원이 고유한 분쟁해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 소송비용 등을 절감시켜 분쟁 해결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옴

※ 2019년 기준 1심 법원 민사본안 사건 중 소액사건은 681,576건으로서 전체의 71.8%에 해당함. 주민자율조정을 통해 이웃분쟁을 해결하면 법원은 사법적 판단이 불가피한 중요한 사건 등에 대한 업무집중도를 높일 수 있음

○ 기존문헌을 살펴보면 소송과 비교하여 ADR의 장점으로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저비용성', '절차의 유연성과 용이한 접근성', '분쟁당사자 간의 손상된 관계의 회복',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자율조정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됨(김봉철, 2021)

- 주민자율조정은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쟁당사자인 주민의 접근성이 높고, 그만큼 신속하게 분쟁해결이 가능하며, 어느 곳이든지 조정을 진행할 수 있음

- 고도의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이 아니며, 양보와 타협에 의해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1회의 조정만으로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법적으로 정해진 구조화된 틀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조정절차 진행이 가능

- 국내의 경우 주민자율조정기구에서는 무료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

- 소송의 경우 소송 후에 분쟁당사자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주민자율조정은 분쟁당사자 간의 양보와 합의에 의하여 합리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손상된 분쟁당사자 간 관계가 치유될 수 있음

○ 수원시는 2017년 주권자인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참여 및 시민자치를 시정 전반에서 실현하기 위해, 시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참여·협치·포용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 추진하기 위해 정책선언을 한 바 있으며, 마을만들기 사업, 시민배심원제, 광교산 상생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갈등관리의 우수 사례를 만들기도 하였음

- 주민자율조정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앞서 언급한 다양한 장점 이외에도 수원이 추구하고 있는 참여·협치·포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Ⅱ. 주민자율분쟁조정 해외 사례[1)]

1 미국

○ 미국의 전통적 민사소송은 엄격한 대립적 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에 입각해 법원은 소극적이고 중립적인 심판자 지위에 머물러, 소송의 장기화, 소송비용의 고액화의 문제점이 대두

- 이에 따라 일부 도시에서는 자생적인 ADR 프로그램이 등장하였고, 1976년 개최된 파운드 회의(Pound Conference)를 통해 ADR이 크게 발전

※ 파운드 회의를 거점으로 ADR은 크게 발전해 민사소송 사건의 약 90~95%가 재판 전 단계에서 협상을 포함한 ADR을 통해 해결되고 있으며(함영주, 2014), ADR을 통한 분쟁해결이 재판보다 선호되고 일반화됨

○ 파운드 회의 이후 미국 연방법무부에서 고비용, 저효율의 법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조정센터(Community Mediation Center)를 시범적으로 설치

- 이웃분쟁해결센터(Neighborhood Justice Center), 주민분쟁해결센터(Community Dispute Resolution Center), 주민조정서비스(Community Mediation Services) 등으로 불림

○ 미국 연방법무부는 1978년 애틀란타, 캔자스시티, 로스엔젤레스 3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고, 1980년에는 호놀룰루와 댈러스에도 설치하였으며,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어 2008년 기준으로 550여개의 주민조정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유병현, 2009)

- 현재 미국 주민조정센터 연합회에 가입된 주민조정센터는 139개에 이르고, 대략 400개의 주민조정센터가 있다고 함
- 미국의 주민조정센터들은 87%가 비영리단체, 10.7%가 국가기관, 1.5%가 대학 부속기관으로 설치(Felicia Washington, 2019)

○ 미국 주민조정센터의 설치 목표

- ①주민조정을 통해 경미한 민·형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설치
- ②소송과 같은 대립적인 절차로 해결하기에는 부적합한 분쟁을 해결하여 법원의 사건부담 덜기

1) 해외사례는 김봉철(2021)의 제3장 외국에서의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제도를 참고하여 요약 및 재구성함.

- ③분쟁 당사자들에게 공정하면서도 분쟁이 재연되지 않는 영속적인 해결 도모
- ④법원 외에 다른 기관에 의해 더욱 적절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 제공

○ 미국 주민조정센터의 특징

- 미국 주민조정센터 연합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민조정센터의 특징을 제시

[표 1] 미국 주민조정센터의 특징

미국 주민조정센터 특징
첫째, 주민조정센터의 지역사회의 다양성 대표
둘째, 훈련된 자원봉사자로서의 주민조정인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조정
셋째, 조정서비스의 대중에 대한 직접적 공급
넷째, 주민의 지불능력과 관계없는 서비스 제공
다섯째, 차별 없는 조정서비스 제공
여섯째, 분쟁초기 단계에서의 소송제기 가능
일곱째, 분쟁의 모든 단계에서의 소송제기 가능
여덟째, 적극적 시스템 변화를 위한 협력적 공동체 관계 개시와 촉진 및 교육
아홉째, 조정의 가치와 실천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교육활동 참여

○ 미국 주민조정센터는 이웃분쟁 뿐 아니라 이혼 등을 포함한 가정 내 분쟁, 임대차 문제, 직장 내 분쟁, 학교 교우분쟁, 소비자 분쟁 등도 담당하며,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알선이나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방식도 활용

○ 미국의 주민조정인은 지역사회 대표자로서 다양한 사회적·정치적·윤리적·인종적·경제적 배경을 가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며, 이들 중 80%는 변호사가 아님

- 매년 약 90만 명의 조정인이 43만 건이 넘는 조정을 수행하며, 매년 1,700만 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음. 조정인들은 평균 4년 동안 활동하며, 매년 35시간 정도의 조정업무를 담당(Felicia Washington, 2019)

○ 미국의 주민자율조정 활성화는 민간에서의 자생적 확산도 큰 기여를 했지만 정부의 입법적 노력도 중요하게 작동

- 미시건주의 경우 1988년 주민분쟁해결법(Community Dispute Resolution Act) 제정을 통해 주민조정센터에 대한 기부와 재정지원, 주민조정센터 기금 마련, 법원의 주민조정센터에 대한 사건회부, 조정안의 집행성, 조정의 비밀성 등에 관한 입법적 근거 마련

○ 주민조정센터는 법원과 연계되어 운영되기도 하며, 법원과 연계되는 경우 법관이 주민자율조정에 가끔 참석하기도 함

○ 미국은 주민조정센터가 하나의 분쟁해결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많은 사건을 법원의 회부에 의존하는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

※ 사건처리 수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사건을 법원의 회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확보의 필요성 때문이기도 함

○ 최근에는 지역주민의 조정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화, 컴퓨터 채팅, 영상통화 등을 활발하게 도입

[표 2] 미국의 주요 주민조정센터 운영 현황

구분	주요 내용
테네시주 앤더슨 카운티 주민조정센터	- 1986년 설립되었으며, 앤더슨 카운티(Anderson County) 법원 내에 설치 - 센터장과 상근 직원 2명, 주민조정인 20명으로 구성 - 주민조정인에는 각 분야 전문가인 도시계획가, 식물학자, 재무담당자 등이 포함 - 모든 조정은 무료이며, 조정인은 다양한 연령의 자원봉사자들로서 훈련되어있음 - 주민조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12~15시간 기본 조정훈련과 20시간의 조정프로그램별 훈련을 받고 조정실습에 참여해야 함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시 주민조정센터	- 시 당국에 의하여 운영 - 조정은 훈련된 자원봉사자인 주민조정인에 의하여 진행되며, 조정절차는 2시간 소요 - 조정은 무료이며, 조정절차는 전화, 서면, 이메일,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 - 조정 가이드라인 제정 : 조정인 행동강령, 분쟁당사자들의 책임, 조정절차의 비밀성, 조정인의 자격과 조정인 훈련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미들랜드 주민조정센터	- 비영리단체로 1998년 설립 - 7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인 주민조정인이 소속 - 조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분쟁당사자 불출석에 대비해 예치금 25달러를 받고 있음 - 주요 재원 중 하나는 기부금으로 2019년 27,585달러 기부금 수령 - 주민조정인 양성교육 수행(30시간 이론 교육과 10시간 실무수습) : 매년 3회 진행되며, 비용은 250달러임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제1심 법원 주민조정센터	- 네바다주 의회에 의해 1991년 설립되었으나, 2006년 라스베가스 지방법원에 편입 - 주민조정센터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진행 - 조정절차는 일반적으로 2시간이며, 최대 2회까지 추가적 조정절차 진행 - 다양한 언어배경을 가진 주민들을 위해 통역서비스 제공하며, 전화를 통한 조정도 가능 (주민합의율은 약 76%) - 주민조정인은 변호사 뿐만 아니라, 전직 판사, 공인중개사, 학생, 주부 등도 포함되며, 주민조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40시간의 기본 조정교육을 이수해야 함 (교육은 라스베가스 네바다 대학교와 공동 진행

2 호주

○ 호주는 약 30년 전 주민조정센터(Community Justice Centres)를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성장

- 1981년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주에서 최초로 주민조정센터 설치
- 시드니(Sydney)의 뱅크스타운(Bankstown), 울런공(Wollongong), 서리힐스(Surry Hills)에 설치되었으며, 전액을 주정부로부터 지원받음
- 뉴사우스웨일스주 주민조정센터에는 다양한 직업, 연령, 언어, 배경을 지닌 약 50여명의 주민조정인이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은 54시간의 조정훈련을 받은 사람들임(Miranda Zander, 2017)

○ 이후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주민조정센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1983년 주민조정센터법(Community Justice Centres Act) 제정

○ 1995년 국가 대체적 분쟁해결 자문위원회(Nation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visory Council: NADRAC)가 설치되어 2013년까지 활동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민자율조정제도가 크게 발전

○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성공사례로 다른 주에도 적극적으로 도입

- 퀸스랜드(Queensland)주는 1990년 분쟁해결센터법(Dispute Resolution Centres Act)을 제정하여 주민조정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6개의 주민조정센터를 운영

※ 퀸스랜드주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286건의 주민자율조정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용자 만족도는 93%, 조정성립률은 84%로 나타남

- 노던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주는 2003년 주법무부 산하에 주민조정센터를 설치하고, 2005년 주민조정센터법 제정

○ 호주의 주민조정센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소음, 주차문제, 배수문제, 경계 침범 등과 같은 이웃분쟁 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문제, 소비자분쟁, 직장 내 분쟁 등에 대한 조정도 하고 있음

○ 1980년대 후반부터 호주의 로스쿨들은 법학 교육과정으로서 주민자율조정을 포함한 ADR을 도입하였고, 2000년에는 대부분의 로스쿨이 ADR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며, ADR을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편성하기도 하였음

[표 3] 호주의 주요 주민조정센터 운영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노던테리토리주 주민조정센터	- 주정부가 설치한 분쟁해결기관으로 조정절차를 무료로 진행 - 주민조정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정신청은 전화신청, 서면신청, 이메일신청,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무료통역서비스 진행 - 조정절차에는 주민조정센터에 의해 훈련된 1~2인의 주민조정인이 참여하며 중립적 입장에서 문제를 확인 후, 해결방안을 찾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분쟁당사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합의점을 찾는 역할을 담당 - 주민자율조정은 저녁시간 또는 주말에도 진행되며, 전화를 통한 조정도 가능 -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2~4시간이며, 조정합의율은 85%가 넘음
빅토리아주 분쟁해결센터	- 빅토리아 주법무부가 1987년 분쟁해결센터(Dispute Settlement Centre) 설립하여 주민자율조정 담당 - 무료로 진행되며,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 주민조정인과 임직원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 - 조정은 분쟁해결센터 외에도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 가능하며, 합의율은 85%, 서비스 만족도는 8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민조정인 교육은 유료이며, 최종 교육과 인증 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4,070 호주 달러임

3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민자율조정과 ADR이 발전

- 싱가포르 정부는 1996년 ADR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제도 도입여부를 검토하였으며, ADR위원회는 사적 조정을 상사조정과 주민조정으로 나누어 발전시키도록 권유

- 그 결과 1997년 상사부문 분쟁해결을 위해 싱가포르 조정센터(the Singapore Mediation Center)가 설립되고, 사회적 융화를 위한 주민조정센터법 제정, 1998년 주민조정센터(the Community Mediation Centre)를 설치

○ 싱가포르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998년 동부 주민조정센터 설치한 이후, 1999년에는 중앙에, 2001년에는 북부에, 2004년에는 당시 하급법원(Subordinate Courts) 내에 주민조정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외부 조정서비스센터를 확대(박철규, 2018)

○ 싱가포르는 다민족이 모여 사는 다문화 사회로 구성원들 간의 소송이 빈번한 사회

를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으로 설립

- 주민조정센터는 싱가포르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법무부에서 감독하고 후원
- 법무부 공무원이 상근하면서 조정사건 관리, 조정인 관리, 홍보, 기타 행정사항 등의 업무 담당

○ 싱가포르 주민조정센터는 주로 이웃분쟁을 대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 친구와 직장동료, 임대인과 임차인 등 대인관계 간 분쟁을 대상에 포함

- 악취유발 행위, 매연유발 행위, 동물관련 불만사항, 소유권 침해, 허용할 수 없는 행동 또는 행동의 표시, 누수, 폐기물 투기, 아파트 복도통행 방해 등과 같은 공용공간 사용방해, 소음, 모욕 등이 포함되나, 계약상의 분쟁과 상업적 분쟁은 제외

○ 주민조정센터에는 영어 뿐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와 지방 언어를 습득한 주민조정인이 있으며, 25세 이상의 싱가포르인과 영주권자는 주민조정인이 될 수 있음

- 조정인은 경력에 따라 수석조정인(Senior Master Mediator), 선임조정인(Master Mediator), 조정인으로 나뉨
- 주민조정인은 자원봉사자로서 다양한 직업군, 연령, 민족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장관에 의해 선발, 교육, 임명됨

○ 주민조정이 되려면 기본 조정교육을 받고,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조정의 목적과 철학, 조정과정, 소통기법, 상담능력 등이 포함

-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함. 연임이 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싱가포르 주민조정센터의 조정은 분쟁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경찰, 공공주택 공급개발위원회, 지방의회, 국회의원, 시민단체의 회부에 의하여 개시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분쟁당사자의 동의가 필요

-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 각각 5싱가포르 달러(SGD)를 납부해야 함

○ 싱가포르 전역에서 총 160명의 조정가가 활동하고 있는 CMC는 이웃 간, 또는 가족 간의 갈등을 주로 다루며, 설립 후 20년 동안 총 8,000여 건의 갈등을 조정했으며, 이는 연평균 500건에 달하는 수치임

- 싱가포르의 임란위원 수석조정가는 싱가포르 인구를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숫자이며, 8,000개 중 75%가 성공적으로 중재되었다고 발표[2)]

Ⅲ. 주민자율분쟁조정 국내 사례

1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3)]

1) 설립배경

○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의 경험(2009년, 층간소음 분쟁 상담)을 바탕으로 시민 및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조정 시스템의 필요성 발견

○ 2013년, 은평뉴타운 5단지 제각말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 당시, 서울 YMCA의 일부 인원이 현지 마을 센터 등에 3개월 간 상근하면서 현지 주민(330여 세대)과 친목 및 신뢰를 구축
- 신청주민을 대상으로 현지의 생활문제에 대해서 워크샵으로 풀어보는 기초 및 심화 보수교육 진행을 통해 주민자율조정가를 양성(국내 최초 선례)

○ 25개 자치구 내 20여개 아파트(마을) 단지의 주민자율조정가화 후 아파트 관리 규약에 주민자율조정 관련 조항을 일부 추가(공동주택 관리 범주 내 제도화)

- 은평구 갈현동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자율조정가가 활동하는 마을 계획단 내 '이웃사이다' 분과 개설(지역사회로의 활동 범주 확대)
- 한편, 대학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주민자율조정교육의 기초 공익활동화 추진

○ 2016년 서울특별시청 별관 내에 현재의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가 정립

- 2015년, 시의 지역시장 내 시민분쟁조정센터 설립을 구상하였으나, 서울 YMCA가 추천한 싱가포르 모델(도시형에 적합)의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설립
- 현재, 법률지원 담당관에서 매년 약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배당받아 운영 중
- 조정위원(비상임) : 마을변호사 15명, 갈등조정전문가 15명, 코디네이터(상담)

※ 단, 이웃분쟁조정센터와 서울특별시가 주도적으로 분쟁조정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중간에 위치한 주민자율조정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례의 신중한 제정이 관건이며, 일례로 서울특별시 층간소음 조례에 '주민자율조정가 양성'과 함께 '이에 대한 자치구청장의 지원 가능' 조항이 추가

2) 오마이뉴스, "한국과 닮은 싱가포르, 층간소음 해결은 달랐다(2016.11.11. 기사)"

3) 서울 YMCA와의 영상회의 내용(2021.11.16.)을 토대로 구성

○ 2017년, 서울 YMCA의 자문 협조로 성동구 내 주민분쟁조정센터가 설립 후, 17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기본 및 심화 교육을 진행

- 단, 예산 책정의 지속성 하향과 함께 대규모 문제 해결에 대한 편중이 우려
- 층간소음, 마을버스 노선, 단지 간 우회로 개방 등의 소규모 문제 해결은 아파트 단지(마을) 기반의 주민자율조정체계가 바람직함

2) 특장점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의 체계성은 평택시의 사례로도 입증

- 2017년, 서울 YMCA는 평택 YMCA 거버넌스 팀과 협력하여 현지의 주민자율조정가를 양성(현재까지 12기 교육을 통해 200여명이 배출)
- (現) 평택시장의 요청 하에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와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의 기능과 형태가 조합된 평택형 '주민자율화해조정지원인' 체계가 정립

※ 층간소음 조례에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및 '이에 대한 자치시장의 지원 가능' 조항을 추가한 형태로 이웃분쟁조정 및 공공갈등 조정 조례가 신설(2019년, 행정안전부 의정 대상회 최우수상 사례)

○ 주민자율분쟁조정 체계의 범주 확산 및 연계 추진 구상

- 아파트 단지 → 동 주민센터(작은 시민 중계실)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컨트롤타워) + 지역별 주민자율조정가 → 문제해결의 광역(권)화 및 체계화 → 국외의 광역권 도시에 한국형 공동체 조정 모델 수출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평택시 등이 연계되는 전국 마을 조정가 지원 네트워크(주민자율조정가를 지원하는 단체들의 네트워크)의 설립

※ 평택 YMCA의 이웃분쟁 및 공공갈등 조정 사업을 중심으로 이상적, 시범적 모델 설계

2 강동어울림[4)]

1) 설립배경

○ 서울시와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책정한 자치구별 주민자율조정제도 관련 예산(서울시 예산)을 기반으로 설립

- 단, 관 주도의 제도화보다는 주민 주도의 관습화에 초점을 두고, 평소 주민자율분쟁조정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을 모집하여 구성
- 수차례 홍보 후에 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주민자율조정위원회로서 설립

○ 강동구 주민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정신과,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주민갈등 및 분쟁 해결에 대한 사명감에 설립 취지를 둠

2) 주민의 접근성

○ 설립 이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현재는 대다수의 강동구 주민이 해당 단체를 인지하며, 당사자 또는 제3자로서 분쟁 해결을 요청

- 초기에 주민의 저조한 관심을 극복하고자 아파트 공동현관에 분쟁해결 의뢰를 요청하는 메모지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현장 홍보에 주력(98% 연락 수신율)
- 현재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가 주로 주민갈등 조정 및 상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분쟁 당사자 주민에 대한 강동어울림의 접근성이 제고

○ 주민분쟁 민원의 강동구 감사과 접수(60~70%)와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의뢰(30~40%)를 통하여 이관된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 및 해결을 진행

- 주민 주도 성격의 순수한 봉사단체라는 입지에서 대외적으로 중립성이 인정되며, 분쟁에 대한 공정한 조정의 상징으로서 강동구와 주민들의 신뢰를 획득
- 특히 감사과 접수 분쟁은 쌍방 간 갈등이 격화된 상태로서 해결이 어려우나, 강동어울림으로 이관 후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원만히 조정 및 해결

○ 일부 주민은 자율분쟁조정에 관심을 가지고, 강동어울림이 시행하는 갈등 조정 전문가 교육을 이수

4) 강동구 주민자율분쟁조정 사례 답사 및 인터뷰 내용(2021.10.25.)을 토대로 구성

- 2019년 8월 31일 첫 수료식 이후, 동년 10월 매주 토요일에 수료생 및 회원이 모임
- 2021년 10월 27일에 2기 수료생(19명)을 양성 후, 희망 주민을 지속적으로 모집하여 '교육 수료생 → 조정 전문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 현재 갈등 조정 상담원은 조정 합의서 작성원, 조정 상담 인터뷰원, 제반 서류 정리원 등으로 3명이 1팀으로 구성

3) 단체의 지속성

○ 현재 주민분쟁의 조정 및 해결 성과에 비해 운영 재정이 부족한 문제에 직면

- 매년 이웃 만들기 사업 예산(75만원)을 확보하지만, 이는 회의비와 홍보비 등으로 1년 간 소모하는 데 부족한 현실
- 홍보 면에서는 감사과의 협조를 받지만, 자치행정과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예산 및 공간의 확보가 시급

○ 교육 수료생의 주요 연령층이 퇴직 전후의 50~70대인 특성도 잠정적 문제로 작용

- 특히 해당 연령층은 퇴직 후로도 경제 활동을 희망하므로 이를 주민분쟁 조정 체계와 연계하고,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고자 일정한 금전적 사례가 필요
- 한편, 현장의 격무를 고려할 때 젊은 연령층의 지원도 시급

4) 특장점

○ 강동어울림은 국내의 대표적인 주민주도형 자율분쟁조정 체계로서 단체의 순수성, 공정성 등이 대외적으로 중요한 동력이 되어, 주민갈등 해결을 선도

- 당사자 간 조정 합의서를 쓰기 전단계인 합의 전 사전조치 완료로도 주민 갈등이 실질적으로 해결
- 해당 단체를 통해 분쟁 조정을 경험한 주민이 제3자로서 이웃 간 분쟁 발생을 제보 후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 2019년, 조정 1건, 2020년 조정 12건, 2021년 9월말 기준 조정 24건을 수행

후, 4건의 합의조정이 완료되었는데 이는 강동어울림이 관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는 주민 자생 모임이라는 사실에 근거할 때, 의미 있는 성과

※ 조정 건수로는 층간 소음(23건)이 가장 많고, 폐품처리 소음 및 기타 갈등 관련 사례도 있음

○ 향후, 분쟁조정 수당, 소통 유지비, 홍보 활동비, 조정 상담비 등의 필요성을 강동구에 제시함으로써 정책화를 추진할 예정

○ 주민자율분쟁조정에 대한 동별 책임제를 이상적인 목표로 구상 및 계획

- 2기 교육 수료생 19명과 기존의 15명 구성원 중 활동에 적극적인 7~8명을 합하여, 남녀의 비율이 동등한 3~4명을 1개조로 편성하고, 총 3개조를 운영
- 궁극적으로 행정동별 조정팀(분과) 체계를 구축하여, 강동구 주민의 실제 거주지에 조정 전문가 주민이 상시 배치되는 효과로써 분쟁해결의 접근성과 만족도 제고 및 단체 홍보의 현지 주민화를 구상

3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5)]

1) 설립배경

○ 법원의 업무와 주민 민원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법원 담당자와 광역시장의 협의를 통하여 소속 5개 자치구에서 적합한 분쟁조정 단체로서 설립

- 과거 남구청 마을공동체 협력센터에서 도시재생공동체 시범 사업으로 마을분쟁해결센터를 설립 후, 은평구 갈현동 사랑방 사례의 견학(1기 교육)을 통해 광역시 각지에 '주민화해지원인' 중심의 소통방 및 소속 센터 체계를 구축
- (現)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는 남구청 마을분쟁해결센터에 뿌리를 두며, 주민자율분쟁조정 체계를 광역시 전역으로 확산하고자 설립

※ 단, 도시재생공동체 내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서 설립 및 운영

○ 미국의 선진적인 주민조정자율제도를 모범으로 '민주의 도시' 광주광역시에 적합한 합리적인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설립 취지를 둠

5) 광주광역시 주민자율분쟁조정 사례 답사 및 인터뷰 내용(2021.11.03.)을 토대로 구성

2) 주민의 접근성

○ 설립 초기에 일시적인 난항을 거친 이후로, 해당센터에 대한 대중적인 홍보와 광역시의 깊은 조예에 힘입어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

- 소통방 설립 및 운영 사업이 광역시의 주요 관심 대상인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므로, 해당 센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조명
- 본 센터는 주민자율분쟁해결에 집중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표명하므로, 주민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

○ 특히 주민분쟁에 대한 조정 및 해결의 기초로서 '주민화해'를 지원하는 데 일정한 플랫폼으로서 기능

- 주민 간 분쟁과 갈등에 대해서 소기적인 해결보다는 장기적으로 해당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을 기반으로 소통과 분쟁 해결을 추진
- 분쟁조정 및 해결에 대한 양적 성과보다는 해당 체계에 대한 주민화라는 질적 성과를 추구

3) 단체의 지속성

○ 현재 지자체(자치구)와 소통방, 협력기관 간의 협업체계에 기반하여 단체가 지속

- 2015년에 남구청에서 마을분쟁해결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에, 광역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현재 70개 소통방 중 50개 소통방에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추진에 필요한 소액이 지원

※ 2019년, 광역시의 공공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1억 5천만원이 50개 소통방을 대상으로 1개 소통방당 300만원이 지원

- 법원 담당자, 법률가 단체, 자원봉사센터가 마을공동체 범주에서 TF팀을 구성

○ 단, 분쟁해결지원센터와 소통방 체계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재정과 인력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현재, 주민 간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인력 중 법조인을 제외한 전문 조정인에 한해서 약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점은 소통방 운영 재정의 악화로 연결
- 광역시 전역에 확산되는 소통방은 주민자율분쟁조정 체계 결절로서 유지

4) 특장점

○ 국내 최초의 민·관·산·학이 연계 및 협업하고, 지역별도로 광역시-자치구-마을(소통방) 단위로 연계되는 맞춤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강점을 보임

- 소통방을 단일하게 운영하지 않고 도회지형, 도·농 복합형, 청소년형, 아파트형 등 구성원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 특히 본 센터는 소통방을 찾아오는 (잠재적) 갈등관계 상태의 이웃 주민 간에 분쟁을 1차적으로 해결하고자, 지역별 소통방에 필요한 지원 시스템 및 플랫폼을 적지적시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 소통을 원하는 주민을 발굴하고자 아파트 및 마을에 '소통 요청 문패'를 배부하고, 해당 문패를 공동현관문 또는 특정 장소에 걸 것을 캠페인 영상 등을 통하여 안내

○ 광주형 주민자율분쟁조정 절차는 네 가지 단계로서 체계화

- 제1단계 : 1차 컨설턴트(소통방장)가 주민 간 분쟁을 토론으로 해결
- 제2단계 : 소통방에서 해결하지 못한 분쟁 사건이 자치구로 이관되고, 자치구에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로 안내 후, 2차 컨설턴트(주민화해지원인)를 통하여 주민화해를 도모
- 제3단계 : 3차 컨설턴트(전문가 조정인)가 법적 소송 직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 및 비용을 안내 후, 분쟁 당사자 주민의 법적 소송 추진 의향을 문의

※ 자원봉사 자격의 법률 자문가로부터 모의 소송 결과(예 : 층간소음 1건당 약 30만원)를 인지한 주민 대다수가 소송을 보류하는 효과

- 제4단계 : 제1단계~제3단계(본 센터 지원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주민 분쟁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 후 소송 절차가 진행

※ 이러한 분쟁 사건은 철저한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상호 양보가 어려운 특성을 보이며 실질적으로 공동체의 범주에서 해결이 불가능

○ 광주형 주민자율분쟁조정의 확장성

- (인력) 소통방 교육을 이수한 주민이 분쟁조정 절차 제2단계의 주민화해지원인으로 활약, 일부는 전문과정 이수 후 제3단계의 전문가 조정인으로 역할

※ 단, 조정활동에 대한 부족한 수당은 전문가 조정인의 지속적인 참여를 저해하며, 공식적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법률 전문가에 대한 일부 법 개정의 추진이 고려

- (사업) 광역시에서 추진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의 최종 목표는 공동체 회복에 있으므로, 소통방 운영도 다른 사업과의 연계로 추진이 가능

※ 약 75개의 소통방 중 50개 정도가 본 센터 사업의 지원을 받으며, 그 외 15여개 소통방은 다른 사업으로 운영되는 특성은 마을 공동체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지역별 소통방에게 상황과 환경에 적합한 루트를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유연성을 제공

※ 단, 마을 공동체의 소규모 예산 규모에 한정한 분쟁조정 활동은 사업의 확장성이 강하지 않음

○ 본 센터와 소통방의 자율분쟁조정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중심으로 광역시에 관련 예산을 지원 요청할 예정

○ 마을 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화목을 이상적인 목표로 구상 및 계획

- 특히 주민 간의 경미한 갈등은 소통방으로의 취합 이전에 당사자 간의 대화로 해결되는 풍토를 조성

- 궁극적으로 '소통방 = 분쟁해결의 결절'이라는 소극적 소통방 문화에서 '소통방 = 주민화목의 장소'라는 적극적 소통방 문화로의 도약을 구상

Ⅳ. 수원시 주민자율분쟁조정 지원체계 구상[6)]

1 조직

1) 주민자율분쟁조정센터의 조직

○ 주민자율조정센터, 이웃분쟁조정센터의 조직은 주민자치의 기본 관념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법무부 외, 2015)

- 주민 스스로가 분쟁해결의 주체이자 객체이어야 하며, 단순히 과거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주요한 소통 및 의사결정 창구로서 건강한 시민의식을 배양하고 이웃공동체를 일궈가는 역할을 지향해야 함(김희경 외, 2018)
-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의 역할은 프로그램과 예산, 공간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자문과 컨설팅을 조력할 전문가 풀을 제공하는 것임

※ 광주마을분쟁센터의 경우 법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단체 등의 지원으로 풍성한 인력 풀을 마련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이 직접운영하는 콘트롤타워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의 자치와 참여로 운영되는 '주민자율조정기구'와는 거리가 있으며, 행정당국의 민원처리 서비스기관으로 한정되는 우려가 있음

- 지역주민 조정인들의 참여와 자치로 운영되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의 주민소통방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앞선 사례와 김희경 외(2018)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주민자율조정센터의 조직구조는 다음을 고려해야 함

- ①주민과 외부전문가들로 꾸려진 운영위원회

※ 외부전문가에는 NGO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행정기구 공무원 등이 포함

- ②운영위원회는 주민조정인을 모집·교육하여 조정인 풀을 구성
- ③1~2인의 상근인력 : 조정신청을 받고 조정인 풀을 관리

※ 1~2인의 상근인력은 일부 유급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

- ④사건을 조정인에게 배정하여 조정 실시
- ⑤마을 내 소통방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갈등이 분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한 사전 예방

6) 지원체계 구상은 김희경 외(2018) 내용을 바탕으로 수원시 여건에 맞게 제안하였음.

2) 조정인 모집

○ 조정인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

○ 수원시에 일정기간 거주하여 수원의 특성과 문화에 대해 잘 알고, 마을의 분쟁해결에 대해 동참하고 봉사하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가꿔나가는데 동기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정연구원 시민자치대학에서 갈등조정 전문가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료자를 상대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

3) 조정인 교육·훈련

○ 조정인으로 지원한 주민들에게는 반드시 조정인 교육이 이뤄져야 함

○ 교육프로그램에는 단순히 조정기술만 배우는 과정을 넘어서 건강한 시민의식과 마을 공동체를 위한 활동이라는 가치와 철학이 공유되어야 함

○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주민들이 분쟁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주민 조정인이 많아지면서 이웃분쟁조정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커지고, 나아가 일상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시민들의 역량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의 대학과 전문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ADR, 특히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교육자나 연구자 양성이 중요

- 수원시정연구원의 경우 현재 시민자치대학을 통해 갈등조정 전문가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 발전하는 방안이 필요
- 또한 수원시는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와 공공갈등과 관련한 협업 경험이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협력 가능

2 재정

1) 운영자금

○ 운영자금의 마련은 주민자율분쟁조정센터 설립·운영에 필수적 요소임

○ 기본적으로 전체 사무와 조정인을 관리할 상주인력 1인이 필요한데 무보수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할 경우 효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상근인력 인건비 외에 주민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료, 센터에 구비되어야 할 도서와 운영위원회 및 조정인 회의 운영비 등에도 일정비용이 필요

- 수원시는 수원시정연구원 시민자치대학에서 갈등조정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수원시정연구원 시민자치대학을 활용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출발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처럼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와 연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수원시에는 수원도시재단 안에 '마을르네상스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으며, 마을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는 궁극적으로 협치 기반의 주민역량을 높이기 위한 '주민자율분쟁조정센터'와 지향점이 같다고 할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州법에 의해 예산으로 지원받거나 법원 수입 중 일부, 기부금, 조정 수수료 등으로 충당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다수임

○ 장기적으로는 외국처럼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지만, 초기단계에서는 수원시 차원에서 예산책정 및 배분이 제도화되어야 하며, 센터의 설립근거와 예산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

- 평택시의 경우 2019년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를 통해 이웃분쟁조정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시
- 수원시는 현재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주민자율분쟁조정센터(가안)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

2) 공간마련

○ 공간은 센터의 안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서, 교육·훈련 공간, 상주인력 공간 이외에 마을 곳곳에 누구나 쉽게 찾아오고 상담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의 '소통방' 개념의 공간들이 필요

○ 광주광역시는 광역시-자치구-마을(소통방)로 연결되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으며, 소통방을 (잠재적) 갈등관계의 이웃 주민 간에 분쟁을 1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시스템과 플랫폼으로 제공

○ 은평구 제각말 마을의 '이웃사랑해'의 경우 마을도서관과 밀로티 공간 등을 활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기도 하며, 마을의 학교나 교회, 비영리단체 등의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도 제안될 수 있으나, 보다 안정적이고 접근이 쉬운 공간은 주민자치센터 내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임(김희경 외, 2018)

○ 수원시는 수원시정연구원 시민자치대학과 수원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교육 및 컨설팅 기능을 부여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거점으로 아파트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 학교, 교회 등의 공간 등을 '소통방' 개념으로 확대하는 방안 모색 필요

3 업무

1) 홍보

○ 주민자율분쟁조정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은 이웃분쟁의 조정이라는 시민들의 인식과 인지도의 향상과 맞물려 있음

○ 홍보전략은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어떤 점이 좋은지"를 명확히 알게 하고, 주민분쟁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해 줄 이웃조정센터가 바로 가까이 주민자치센터 등 마을 가까이에 있으며, 비용도 적고 문턱도 낮아서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해결이 의외로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떠올리게 하는 것임(박철규, 2014)

○ 이러한 측면에서 주요 홍보전략은 다음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음

- 수원시정연구원 시민자치대학, 수원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 등 주관 기관에서의 교육, 세미나, 컨퍼런스 개최, 발행물 발간, 미디어 홍보 등
- 주민자치센터에서의 홍보 연계, 주민조정인 교육을 통해 마을 소통방 운영을 통해 자연스러운 홍보방안 모색
- 수원시 내 법원, 경찰 등의 사법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이웃조정제도 사건 회부를 통한 홍보 등
- 다가가기 쉬운 용어로 변경 : '주민자율분쟁조정센터' → '수원시 이웃조정센터(예시)', 소통방 등

2) 연계

○ 현재 국내 이웃분쟁조정센터의 사건 접수는 분쟁 당사자 주민의 직접적인 신청에 의존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웃분쟁사건이 센터를 통해 해결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법원이나 경찰서 등 사건 접수가 많은 기관과 수원시 이웃조정센터와의 사건회부시스템 구축이 필요

○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학교, 종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체계를 갖추면 주민분쟁이 당사자 간의 사적부담이나 행정 담당자 일부에게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시스템으로 해결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음

- 법원연계형 조정 : 법원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민관기관에서 법원의 촉탁을 받아 조정을 진행
- 동네 경찰 지구대와의 업무 협약 : 이웃분쟁이 격화되어 경찰에 신고하거나 맞고소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해당사건을 가까운 이웃분쟁조정센터로 이첩하거나 조정 프로그램을 안내

3) 네트워크

○ 현재 국내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지역상황과 참여인력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지역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교환과 경험공유, 분쟁조정 기술개발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앞서 고민을 실천하고 있는 서울YMCA나 강동구, 광주광역시, 평택시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적 교류 필요

○ 또한 지역사회 리더, 변호사 단체, 교수 및 연구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육, 컨설팅, 분쟁조정 등의 업무의 효율적 추진 가능

4) 치유 및 사후관리

○ 우리나라의 사법형·행정형 조정은 당자 관계나 합의 이행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지만, 이웃 간 신뢰와 호혜, 네트워킹을 회복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운동으로서 이웃분쟁조정은 조정 이전·이후가 중요

○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는 환경에서 갈등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이를 건강하게 다루는 갈등문화 형성을 위한 예방활동과 분쟁이 종결된 이후 주민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중심으로 마을르네상스센터와 협력하여 마을 내 상설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조정 이후의 관계회복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4 지원체계 구상(안)

○ 장기적으로는 위에서 제안한 기능을 아우르는 별도의 '주민자율분쟁조정 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는 현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들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범적으로 수원시 주민자율분쟁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

- 수원시 시민소통기획관을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수원시 주민자율분쟁조정 지원체계를 기획·운영
- 수원시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행정, 법원, 경찰에서의 사건과 연계하고 국내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기능을 담당
-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시민자치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갈등관리 전문가 과정을 확대하여 조정인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운영
- 수원도시재단에서는 마을르네상스센터 내에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운영위원회 등의 중심업무를 맡고,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활용하여 소통방 운영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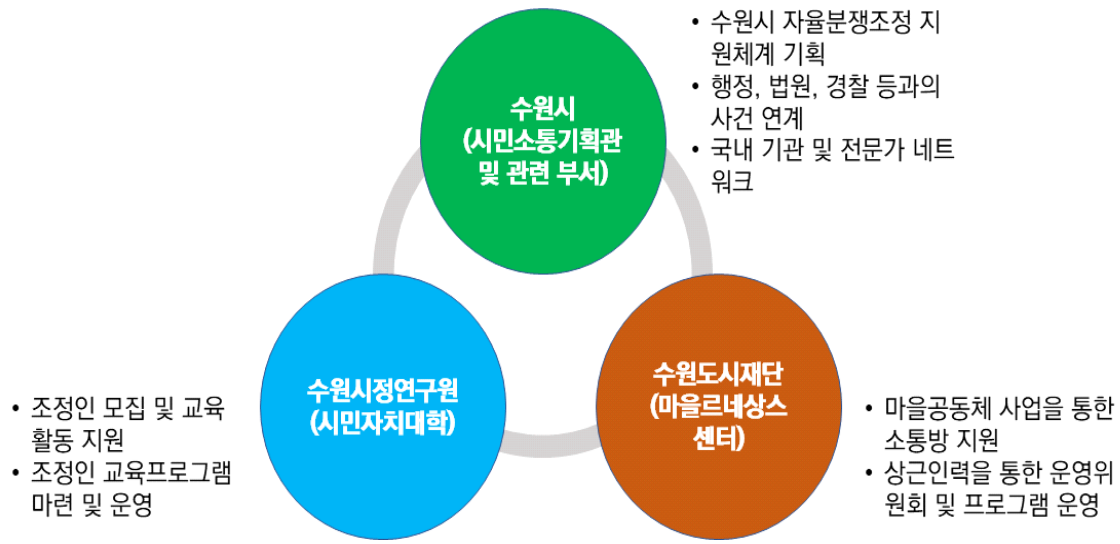

[그림 1] 단기적 주민자율분쟁조정 지원체계 구상

| 참고문헌 |

김봉철, 2021,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김희경·주건일·조용의, 2018, 『이웃분쟁 조정과 예방을 위한 주민자율조정기구 지원제도 연구』, 제2회 공익·인권분야 연구 결과 보고서.

박철규, 2014, 『외국의 Community Mediation 제도를 통해 본 민간형 ADR로서 우리나라 주민분쟁해결센터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의정논총 제9권 제1호.

박철규, 2016, 『미국 민간형 ADR로서의 주민조정프로그램(Community Mediation Program)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황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제23권 제3호.

법무부·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ADR기본법 제정방향 및 현행 ADR기구의 합리적 운영방안』.

유병현, 2009,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민사소송 제13권 제1호.

홍수정, 2016, 『이웃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체 조정(community mediation)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공존협력연구소 공존협력연구 제2권 제1호.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홈페이지 http://gurcc.or.kr/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 http://www.ptndac.or.kr/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발행인 | 김선희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031.220.8001
www.suwon.re.kr

※ 이 SRI 이슈 & 포커스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